#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5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 홍석준 · 이철규 · 김석기

김기현 · 강대식 · 박성중

김용판 · 윤재옥 · 김승수

이주환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임.

그런데 경영난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을 것이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하락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3과세연도로 확대함(안 제8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같은 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5(중소기업의 결손금 소
	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
	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
	세법」 제72조를 적용함에 있
	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
	국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같은
	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
	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
	<u>다.</u>